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기관 확대 등〉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10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동의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 추가	3
2.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즉시 통지	6
3.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결과 공개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박민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5. 10. 1.
3. 회 부 일: 2025.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T, 롯데카드, 인터파크, 루이비통, 아디다스, 써브웨이, 파파존스, 예스24 등 2025년 1~4월에만 3,6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AI 시대 기술·산업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종류와 수집 범위가 일반 신상정보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 등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제3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출처와 목적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다수는 피해 발생 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 외 대규모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부터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20조, 제33조 및 제75조).

Ⅲ. 검토의견

1. 동의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 추가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 ‘제5장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생략)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u>경우</u> 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 -----, -- ----- ---- <u>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u><신 설></u>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5. <u>제5장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u>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ii)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iii)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iv)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현행법 제5장(개인정보의 권리 보장)의 내용과 행사방법도 추가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임.

현행법 제5장은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각 권리 행사의 방법, 손해배상책임,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개정안에 따라 고지하게 되는 제5장의 내용이 상당히 많을뿐 아니라, 동의 시 많은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정보주체가 동의의 핵심 내용을 인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우려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수집·이용 동의 시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홈페이지 게재 사실도 함께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둘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15조) 외에 제3자 제공(제17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제18조), 민감정보처리(제23조), 고유식별정보처리(제24조)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해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제5장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권리 행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5장의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알리는 것은 형식적 고지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즉시 통지

□ 개정안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되, 연락처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u>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u>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 ----- ----- <u>즉시</u> ----- ----- <u>신</u> ----- ----- <u>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2. (생략)	<삭제> ③ 제1항----- -----방법-----. ④ 제1항----- -----. -----. 1. 2.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0조¹⁾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i)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ii)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iii)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및 동의 철회 권리(이하 ‘수집출처 등’)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되,

-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²⁾이 정보주체의 제공 동의를 받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지 않더라도 해당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 알리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 의무를 확대하여 정보주체

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개인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소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규모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비해 작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취약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성이 보다 클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나 수집 근거³⁾(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수집 출처 등을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통지 대상 및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에게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오히려 실질적인 알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국인터넷쇼핑협회는 과도한 통지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로와 혼란,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과 과태료 부과 등의 리스크가 증가할 우려를 제기하였음.

3.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결과 공개

-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민간 개인정보처리자까지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75조제3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 ---장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제출하여야 하고,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 ----- ----- -----장등은----- -----.

현행	개정안
③ ~ ⑩ (생략) ⑪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등----- ----- ----- -----. 제75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④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3조4)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대규모 개인정보파일⁵⁾의 운용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수집, 저장,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권리침해 등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암호화, 접근통제 보호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고, 공공분야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⁶⁾할 때에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⑪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5)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반, 해당 공공기관 내외부의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50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포함,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등(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6)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방법 및 보유기간 등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 현행법상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⁷⁾만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외부 통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과 평가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환경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되고, 평가 지연이나 영업비밀에 관한 논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확대 여부 및 시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민간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대규모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전면적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는 수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원과 함께 관련 절차 개

7)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감면 사유(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성화를 추진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또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공개시 영업비밀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는 대부분 영업비밀 및 정보보안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결과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형식적 평가로 전락하거나, 민간의 적극적인 영향평가 제도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음.

□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현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증 및 평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할 뿐 아니라, 영향평가 기관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서비스 출시 등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4

8)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9. 11.)

【 참고자료 1 】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중 영향평가 관련 내용
(2025. 9.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

□ 개인정보 영향평가 민간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 **(민간 활성화)** 민간의 영향평가 대상*·방법**·기준 구체화, 사고발생시 책임 경감
적용 절차 명확화 등 자율적 영향평가 수행기반 마련

*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성격, 처리 방식 또는 규모로 인하여 정보주체 권익 침해 우려가 높은 경우

** **(현행)** 공공 중심 평가체계(평가기관 의뢰) → **(개선)** 민간은 처리자 자체평가도 허용

< 민간 부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기준 검토(안) >

① 대규모 정보 처리	- ①年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500여 개), ②재학생 수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② 중요도·파급력이 높은 처리	-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주요 이통사 3사 등), 본인확인기관(26개), 전자서명 인증사업자(22개), 또는 중요 인증정보(예: 통신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사업 참여자
③ 새로운 데이터 처리 기술 사용	- 법 제37조의2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그 밖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것 * 예시 : 아동·청소년 등 취약한 정보주체의 대규모 데이터 처리

- **(전문성 강화)** 평가기관 심사 강화(품질검토 결과 재지정 시 반영 등), 신규기관 유입 확대를 통한 평가기관·인력*의 전문성 제고

* 자격요건 강화(예 : 실무경력 1년 → 6년) 및 가칭 '수석 영향평가사' 신설 등

- **(처리자 책임성 강화)** 공공·민간의 CPO가 평가결과 최종 책임자로 서명하고 경영진(기관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권한*·책임 강화

* 사업부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즉시 시정조치 요구(중대한 위험요인 발견시) 등

【 참고자료 2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현황(2026. 2. 25. 기준)

연번	영향평가기관명	최초 지정일	최근 갱신지정일	유효기간 만료일
1	(주)소만사	2012.3.9.	2025.3.9.	2028.3.8.
2	(주)싸이버원			
3	(주)케이씨에이			
4	(주)지티시큐			
5	(주)컴앤휴먼			
6	대진정보통신(주)	2015.8.7.	2023.8.7.	2026.8.6.
7	(주)씨드젠			
8	(주)에이스솔루션			
9	(주)한국전산감리원			
10	(주)씨에이에스	2011.12.23.	2024.12.23.	2027.12.22.
11	(주)안랩			
12	(주)이글루코퍼레이션			
13	(주)한국정보기술단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